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9월 11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9월 1일,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
2)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3) 상정일자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최광열 의원)

1) 개정이유

❍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쉼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구청 민원실 직원들의 점심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여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)주요내용

가. 구청 민원실 교대 운영 대상 제외(안 제6조제1항제1호)
나. 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근거 마련(안 제6조제1항제2호)

3)관련법령

❍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

3. **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** (전문위원 : 김경희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본격 시행된 포항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였으나, 구청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,

❍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시행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남·북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**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남구 2.29건, 북구 2.21건**이며 양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,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그 외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**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**

5. **토론의 요지 : 없 음**

6. **심사결과 :** 원안가결